

13. 企業의 直接金融調達機會 擴充方案

자료제공 : 건설교통부

- 정부는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채 발행물량조정제도를 폐지하고, 유상증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모든 유상증자 요건을 폐지하는 일몰(日沒)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규정 정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임

<주요내용>

□ 회사채 발행제도 개선

-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 폐지
 - 제1단계('97. 6~9월) : 조정대상 축소
(비제조 대기업 자율발행한도 확대 : 월 30억원→100억원)
 - 제2단계('97. 10월 이후) : 회사채 물량조정 폐지
- 무보증채 발행요건 완화
 - 신용평가등급 요건(BBB이상) 폐지
 - 신용평가의무 완화 : 평가후 6개월간 의무면제
- 회사채 만기규제 완화
 - 현행 3년 이상 →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 자율화
- 요 조치사항
 -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(증권위) 등 개정(97. 6월 시행)

□ 유상증자요건 일부완화

- 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증자한도 제한제도를 5대계열기업으로 축소

- 배당성향요건 준수 의무 폐지
- 유상증자요건에 대한 日沒제도 도입
 - 모든 유상증자요건을 99년 12월에 폐지하는 日沒조항을 신설
- 요 조치사항
 -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(증권위) 개정 : '97 하반기

I. 회사채 발행제도 개선

1.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 폐지

□ 현행 제도

- 90년부터 증권업협회내 기채조정협의회에서 월별로 발행물량 조정
 - ※ 기채조정협의회 구성 : 증권사·종금사 인수담당 임원
 - 지표금리인 회사채금리의 안정을 도모하고, 제한된 채권수요하에서 제조업등 투자 우선 산업으로의 자금공급 유도
- 현행 물량조정 대상
 - 점진적으로 자율화하여 현재는 비제조 대기업의 30억 초과 순중 발행에 대해서만 조정가능

			제 조 업	비 제 조 업
중 소 기 업			① '93. 4 자율화	
대기업	차 환		② '94. 1 자율화	② '94. 1. 자율화
	순 중	30억 이하		③ '96. 9 자율화
		30억초과		현재 조정대상

월평균 발행신청(약 3조원)중 약 10% 수준만이 조정대상으로서 자율조정 여건 성숙

□ 개선방안 : 회사채 발행물량조정 제도의 단계적 폐지

- 제1단계('97. 6~9월) : 비제조대기업 소규모 발행 자유화 대상 확대(월 30억원 이하 → 100억원 이하)
- 제2단계('97. 10월 이후) : 발행물량조정 제도 폐지
- 요조치사항 :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(증권위규정) 개정('97. 5)

의 결 안 건

제 1 호 의안

“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” 개정의 건

제안이유

— “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기회 확충방안(재경원, '97. 5. 13)”에 의거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바, 평점계를 폐지하고 10월 이후에는 회사채 물량 조정 기준을 폐지코자 함.

주요골자

- 동일 법인의 월별 회사채 발행한도 설정
 - 제조업체 회사채 : 1,000억
 - 비제조업체의 회사채 : 100억(차환발행은 기발행금액 이내)
- 평점적용 관련조항 삭제 및 주간사계획서 제출일 변경
 - 평점적용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주간사계획서 제출일을 매월 20일에서 말일로 변경
- 증권채 및 신기술사업금융채의 물량조정
 - 증권채 및 신기술사업금융채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이므로 특수채로 간주하여 물량조정
- 미발행제재 완화
 - 발행비율이 60% 미만인 회사에 대한 제재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

의결주문

별첨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.

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 개정(안)

-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.

1. 회사채 발행

- 동일 법인의 월별 회사채 발행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제조 및 비제조업체 구분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기준에 의한다.

가. 제조업체의 회사채

○ 월 1,0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.

나. 비제조업체의 회사채

○ 월 1,000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. 단, 비제조업체의 차환용 회사채는 주간사계획서 제출월말로부터 2개월 10일이내에 만기도래하는 공모사채의 기발행금액 이내로 하고 월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2. 회사채 발행제한

-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.

- 「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」에서 정하는 여신금지업종에 속하는 기업
- 증권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법인으로 조치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로부터 2월 내지 3월의 기간동안의 회사채 발행. 단, 차환발행분은 제외한다.
- 발행허용물량대비 발행비율이 60%미만인 회사의 익월의 회사채 발행. 단, 차환발행분은 제외한다.

3. 주간사계획서 제출등

- 주간사 회사는 매월 말일까지 별첨 주간사계획서에 의거 익월의 주간사계획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「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은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상의 분류기준에 의하되 상시 종업원수 300인이하의 농·임어업자 및 전기·가스·수도업자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. 단,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통산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본다.

4. 기 타

-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신기술 사업금융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는 특수채로 간주하여 물량을 조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기준은 '97년 6월 1일부터 '97년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.

제 2 조(주간사계획서 제출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주간사계획서는 이 기준에 의거 발행물량을 조정한다.